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례안상정

(조례 12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7-93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7-94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95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2017-96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1
2017-97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017-98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1
2017-99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17-100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2017-101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2017-102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3
2017-103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2017-104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93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 이유

법률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불편·부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근거 없이 의무 부과 내용 삭제함(안 제6조, 별지 제5호서식)

○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근거: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에서는 군수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일반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삭제함.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안 제1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8.~8.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1): 합천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삭 제></u>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거창군수 귀하

주채무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거창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라. 상환기간

마. 상환계획

3. 사유

가. 주채무 발생

나. 거창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거창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거창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거창군수는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거창군에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거창군수(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거창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6. 상환계획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거창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 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거창군수는 **다목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거창군수 귀하

채권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채권자(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5. 상환기간

(거창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거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거창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거창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거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94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연서 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완화함(안 제2조)

-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를 ‘200명 이상’에서 ‘190명 이상’으로 개정함.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6~8. 16.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완료(11): 밀양,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산청, 의령, 함양, 합천, 통영, 하동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0명”을 “19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는 <u>200명</u> 이상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 <u>190명</u>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17~9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	---------

1. 제안이유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을 통합
-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 기금의 재원을 정함(안 제4조)

- 국·도비 보조금, 군·군 이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등

다. 기금의 계정별 용도 및 지원대상 등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노인복지계정: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등
- 양성평등계정: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
- 자활계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각 호의 사업 등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계정별 관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이자율이 높은 예금의 관리 등

마.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제14조)

- 위원구성, 위촉해제, 위원장 직무, 회의, 간사, 운영세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가용기금 130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7. 25.~8.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2.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지원
2.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3.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지원
4.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지원
5.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 관련 단체로 한다.

제6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이하 “양성평등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 지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5.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양성평등 관련 단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지원은 제외한다.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란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그 밖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창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③ 자활계정 지원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한도액

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장: 5천만원

나. 개인: 2천만원

2. 용자금 대부이율: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2. 양성평등계정

3. 자활계정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의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노인 복지, 양성평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
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수립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사회복지기금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사업, 자활지원사업 소요경비
- 관련 조문
 - 제5조 노인복지계정의 용도
 - 제6조 양성평등계정의 용도
 - 제7조 자활계정의 용도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노인복지		20	20	21	21	22	104
	양성평등		20	20	21	21	22	104
	자활지원		90	90	92	92	94	458
	계		130	130	134	134	138	666

3. 관련 의견

-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여
- 노인복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적인 지원제도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손 용 모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17~9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	---------

1. 제안이유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설치된 아립예술제진흥기금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운용

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아립예술제, 아립예술제위원회

다.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재원: 국비·도비 보조금, 군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등
- 용도: 아립예술제 행사, 아립예술제 진흥사업 등

마.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
- 해당연도 운용이자의 수익범위에서 집행

바.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제12조)

- 위원회 구성, 위촉해제, 위원장 직무, 운영, 간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가용기금 7,500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7. 26.~8.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아립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립예술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 “아립예술제위원회(이하 “아립제위원회”라 한다)”란 아립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립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의 출연금
4. 아립예술제 행사 잉여금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아립예술제 행사
2. 그 밖의 아립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제8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아립 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따라 수립된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아립예술제 행사 등에 지원
- 관련 조문: 제6조 기금의 용도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군비	7,500	7,500	7,500	7,500	7,500	0
	소계(a)	7,500	7,500	7,500	7,500	7,500	0

3. 관련 의견

-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액(500,318천원) 및 이자발생액(7,500천원)에 대하여 1년마다 기금은 예치하고, 그 이자발생분 내에서 사업추진
- 따라서 기존 조성된 기금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며 별도의 출연금은 발생하지 않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기금 예치: 500,318천원
- 아립예술제 행사지원(이자분): 7,500천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유 태 정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97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이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능 축소로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정관 작성 규정 삭제(구 제2조제2항, 제3조)

-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정관 작성 후 군수의 인가로 성립된다는 규정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아니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

나. 협의회 재정 관련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운영 조항 삭제(구 제9조)

- 협의회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직이므로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그 밖의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에 맞춰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19.~8. 0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 완료(5): 남해, 하동, 창녕, 함양, 합천

-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각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마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7~98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이유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거창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함.

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각 읍·면 의용소방대에 적용함.

다.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라. 포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18년부터 본예산 14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7.~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제정현황

○ 제정완료(8): 창원시, 함양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함안군,
산청군, 고성군

○ 입법예고(1): 창녕군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 각 읍·면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원
2.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의용소방대 임무수행 활동 경비 등
- 관련조문: 제3조(지원범위)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 비용(a - b)		14	14	14	14	14	70
세출	국 비						
	군 비	14	14	14	14	14	70
	소계(a)	14	14	14	14	14	70

3. 관련 의견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군 및 도단위 기술경연대회 참가 보상) 지원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요구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의용소방대 임무수행 활동비(도 및 군 단위 기술경연대회 참가 보상): 14백만원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이 건 호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99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이유

경상남도의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관한 보완요청 사항과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의 기관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2조 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

-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협의회 심의사항 삭제
- 군·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 통합방위예규 적용규정

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함(안 제3조제2항제7호)

- 진주보훈지청장 ⇒ 경남서부보훈지청장

다.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제2호)

-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 분야별 지원반: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에 반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

※ 경상남도의 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보완요청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7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17년도 본예산 사무관리비 2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4.~8.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2): 거제시, 김해시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 제9조”를 “제5조 및 제9조”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를 “통합방위협의회와 거창군 및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 20명 이내로”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진주보훈지청장”을 “경남서부보훈지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
②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2.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은 실장과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본청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둔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협의회”를 “협의회 및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거창군 통합방위 협의회 및 거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조 및 제9조-----통합방위 협의회와 거창군 및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
제2조(심의사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2조(심의사항) ----- -----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u>위원 20명 이내로</u>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6. (생략) 7. <u>진주보훈지청장</u> 8.~10. (생략)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⑦ (생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u>20명</u> <u>이내의 위원으로</u> ----- ----- ----- ② ----- ----- 1.~6. (현행과 같음) 7. <u>경남서부보훈지청장</u> 8.~10. (현행과 같음) 11. ----- <u>사람</u> ③~⑦ (현행과 같음)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군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 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 ②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현행	개정안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⑦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거창군 통합방위예규) 관할지역에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1.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2.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은 실장과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군 본청에,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둔다. <삭 제>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기획감사실-11352호(2016.08.23.)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경비
통보」에 근거하여(위원회 참석수당 70천원)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민간위원 7명을 대상, 분기 1회(총 4회) 회의 추진 시 연 1,960천원의
비용이 필요함.

4. 작 성 자 안전총괄과장 이 건 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00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불일치하거나 재기재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설시장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별표 1)

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제4조)

○ 시장을 사용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점은 예외.

○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취소나 사용제한 가능하다.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제7조, 별표 2)

○ 사용료는 일액으로, 시장 개장일에 징수

마.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바. 법령의 중복·재기재 사항을 삭제(구 제2조~제6조, 제7조2항·제9조·제10조3항·제12조1항·제13조·제14조2항, 제15조~제19조, 제22조)

※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5조~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5조, 제97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3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7.~8.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5): 고성, 사천, 진주, 창원, 하동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거창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일액으로, 시장 개장일에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장현대화 사업,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용허가 취소를 신고한 경우

제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사용료의 징수
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가조시장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110-13 일원
위천시장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47-1 일원
신원시장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2-4 일원

[별표 2]

사용료 기준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장 옥	제공미터당/일	90원
노 점	제공미터당/일	60원

※ 비고

1.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2.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 이동좌판을 말한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01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 이유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법령과 다르게 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조례 규제개선 50선, 위임조례(규제완화) 정비과제

2. 주요내용

가.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함(안 제12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

※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삭제함(안 제17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 위임없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18.~8. 0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5): 김해, 사천, 함안, 창원, 함양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u>	<u>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u>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 ----- ----- -----
<u><단서 신설></u>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 ----- ----- ---
<u>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 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u><삭 제></u>
<u>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u>	
<u>2.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u>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u>	
<u>4. 그 밖의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u>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02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제안 이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재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

2. 주요내용

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둠.(안 제2조)

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함.(안 제4조)

라. 법령 불일치 및 중복·재기재사항 삭제함.(구 제3조~제12조)

- 회계연도, 세입·세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금고설치, 자금의 전용금지,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 처리, 예비비, 결산 및 보고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6조·제9조·제50조, 「지방회계법」 제19조

나. 예산조치: 국비 4,442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6.~8. 16.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 입법 예고(1): 진주시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한다.

1. 재무관: 특별회계업무 담당 부서장
2.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2조(설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출	국비	4,442	4,372	4,306	4,220	4,136	21,476
	소계(a)	4,442	4,372	4,306	4,220	4,136	21,476
세입	국비	4,442	4,372	4,306	4,220	4,136	21,476
	소계(b)	4,442	4,372	4,306	4,220	4,136	21,476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1,392백만원
 - ※ 매년 5퍼센트 정도 사업비 감액
- 수질오염총량관리비: 52백만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2,865백만원
- 상수원관리사업비: 133백만원

작성자: 환 경 과 장 최 정 제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03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개정이유

상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 인상함.(안 별표 2, 별표 4)

○ 요금 인상률 5퍼센트: 세제공미터당 단가 754원⇒792원

나. 요금 감면규정 신설함.(안 별표 7)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제72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7. 21.~8.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5): 진주, 밀양, 창녕, 고성, 함양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를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로 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사용단계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 행	개 정 안
가정용	1~20	610	<u>640</u>
	21~30	810	<u>850</u>
	31이상	1,060	<u>1,110</u>
일반용	1~30	760	<u>800</u>
	31~50	920	<u>970</u>
	51~100	1,070	<u>1,120</u>
	101~300	1,230	<u>1,290</u>
	301이상	1,380	<u>1,450</u>
산업용	1세제곱미터당	710	<u>750</u>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밀리미터)	금액(원)	
	현 행	개 정 안
13	860	<u>900</u>
20	2,430	<u>2,550</u>
25	3,900	<u>4,100</u>
32	6,950	<u>7,300</u>
40	11,720	<u>12,310</u>
50	17,970	<u>18,870</u>
75	43,600	<u>45,780</u>
100	74,340	<u>78,060</u>
150	161,970	<u>170,070</u>

[별표 7]

상수도요금 감면율(제37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급~3급)		
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00퍼센트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사용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가정용	60퍼센트
	일반용	4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
사. <u>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u>	<u>1년차</u>	<u>30퍼센트</u>
	<u>2년차</u>	<u>20퍼센트</u>
	<u>3년차</u>	<u>10퍼센트</u>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비고

1.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목의 경우 지방상수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 부터는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04
----------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

1. 개정이유

하수도요금 적정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한시적 요금감면 대상을 추가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 요금 인상률 5퍼센트: 세제곱미터당 요금 171원⇒179원

나. 요금 감면규정 신설함(안 별표 7)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로 전환하는 지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한시적 감면

다. 법령상 근거 없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매월 청소실적 보고, 분뇨수거 요청시 24시간내 수거: 삭제
-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47조·제65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9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7. 21.~8.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완료(4): 진주, 창녕, 고성, 밀양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2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121조부터 126조까지를”을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로 한다.

별표 1,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한 자는 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한 자로 본다.

제3조(공공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군수의 분뇨 수집·운반 등에 관한 조치명령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분뇨 수거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24시간 내 수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요청인에게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수거하여야 한다.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28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121조부터 1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구분	사용량 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 행	개 정 안
가정용	1~20	130	<u>140</u>
	21~30	180	<u>190</u>
	31이상	240	<u>250</u>
일반용	1~30	160	<u>170</u>
	31~50	200	<u>210</u>
	51~100	240	<u>250</u>
	101~300	280	<u>290</u>
	301이상	340	<u>360</u>
산업용	1톤당	160	<u>170</u>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6조제1항)

감 면 대 상	감 면 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급~3급)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100퍼센트	
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수·폐수처리수 재처리 수를 공급받은 자	20퍼센트	
사. <u>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자</u>	<u>1년차</u>	<u>30퍼센트</u>
	<u>2년차</u>	<u>20퍼센트</u>
	<u>3년차</u>	<u>10퍼센트</u>

주)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비고

1.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 부터는 정상요금을 적용한다.